

## 경운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발전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기금 증식에 관한 사항
- 3.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학생의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도서관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교내 예술·체육·문화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교육시설 보완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본 위원회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9.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중요사항

**제6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**제7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